

창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587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5875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1103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김동진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변론 종결 2022. 7. 8.

판결 선고 2022. 9. 16.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11033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64,969,54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20. 3. 10.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C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2020. 4. 8. 접수 제319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1) (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E2) 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료 240,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E이 D를 상대로 위 장비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D에 송달되자 피고 B은 D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 297,000,000원 중 80,410,000원을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하고 2016. 6. 24.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F에 통지하였다.

2) F은 위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2016. 7. 29. 27,940,000원, 2016. 8. 19. 25,850,000원, 2016. 9. 30. 26,620,000원 합계 80,41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 B의 지시로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송금받은 돈을 모두 다시 송금3) 하였다.

나. E의 원고 상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1) D의 장비대금 채권자 E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사해행위로 파악하고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1430호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소재기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 B은 자신이 일을 해결해주겠다고 하고는 원고 명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였다.
- 3)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허위였음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2019. 11. 27. "원고는 E에게 64,969,54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2. 20. 위 판결(이하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내지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의 유죄 판결

- 1) 피고 B이 위와 같이 E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 H 및 I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 대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등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792, 3139(병합)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2) 위 형사 공판절차에서 피고 B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2021. 1. 19.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1. 8. 26. 항소심에서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3.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매매행위

위와 같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피고 B은 2020. 4. 8.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20. 4. 8. 접수 제319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7호증,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와 원고 사이의 위 F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F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D의 대표이사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B를 위하여 바로 송금하여 원고가 위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해 얻은 이익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채권자 E의 원고에 대한 선행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패소함으로써 E에게 64,969,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비록 원고가 피고 B의 채권자 E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행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의 강제집행면탈행위와 더불어 사문서위조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D의 E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고 B의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원상회복 부담금액 64,969,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판단 위와 같이 피고 B이 2020.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다.

2) 이에 대한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E이 아니라 G인데, 위 강제집행면탈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이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I가 G 및 E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판결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사공탁으로 인한 피보전채권 소멸 여부

(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는 E으로, 피고 B이 G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판결금채무 내지 원상회복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 판결금채무의 실질적인 채권자를 G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형사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 판결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형사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참조).

위 관련 형사판결(갑 제18호증)에 의하면 피고 B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금채권 300,000,000원 중 115,533,000원을 H에게, 10,310,000원을 I에게, 80,410,000원을 원고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위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인하여 G이 입은 손해는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D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채권 240,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형사공탁은 피고 B의 G에 대한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G이 수락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아가 위 공탁 부분에 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G에 대한 채무가 원고의 G에 대한 채무보다 다액이고, 피고 B이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는 피고 B이 G에 대하여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2)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피보전채권 소멸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I에게도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하였는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는 피고 B의 자신에 대한 허위채권양도와 관련하여 G 및 E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I의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판결금채무 내지 원상회복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당심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적극재산으로 배기량 1569cc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및 앞서 본 E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료 240,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총 재산으로는 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4) .

나)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 C의 선의의 항변

1) 항변 요지 피고 C는 피고 B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가 2020.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20. 3. 10., 잔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20. 4. 7.)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B에게 2020. 4. 7. 9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법리 및 피고 C는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구년

판사정강은

판사조유리

별지

- 1) 그 대표이사는 피고 B이다
- 2) 형사사건에서는 실질적 피해자가 E의 아버지인 'G'으로 특정되어 있다.
- 3) 2016. 9. 30. 지급받은 26,620,000원의 경우 2016. 10. 1. 26,200,000원만 송금했으나 이는 당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 4) 위 자동차의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당심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2월 당시 차령을 근거로 자동차세 25% 감면 혜택을 받은 점, 자동차의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이 소극재산에 상당할 정도에 이르리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